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84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경기도는 2004년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이후 증가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지역아동 센터 시도지원단(북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만료 예정임.

나. 이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 필요성 : 시도지원단 업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응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평가미흡, 희망시설 컨설팅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현장평가 모니터링 등 평가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상담 및 안내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 도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추진업무 지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 현장평가 지원(평가안내 및 홍보, 평가 모니터링 등)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운영 컨설팅 진행

라. 소요예산(안) : 199,477천원(국비 30%, 도비 7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인건비(3명) : 149,340천원
- 운영비(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 11,110천원
- 사업비(운영컨설팅, 종사자 교육, 평가지원 등) = 29,427천원
- 차량임대료(운영컨설팅 등 지원*) = 9,600천원 *도비100%

마. 위탁예정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시도지원단 업무는 운영법인·규모별 차이가 있는 시군 소재 지역아동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 2026년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기획담당관-8740(2026.8.3.)호) : 적정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은

-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기에 현재 그 역할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 시설 개요 》

- ▶ 운영법인 :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 소 재 지 :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관 1층
- ▶ 인 력 : 3명 (단장 1, 팀장 1, 팀원 1) / 단장 - 이승연
- ▶ 시설규모 : 49㎡(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등)
- ▶ 담당권역 :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213개

- '24년부터 3년간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¹⁾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 위탁기간은 3년(2027. 1. 1. ~ 2029. 12. 31.)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 본 동의안은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1)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민간위탁 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2026년)

11.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104페이지)

가. 기능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체계 효과 극대화

나. 역할

-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시·도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전문기관

다. 설치 및 비용보조

- 시도지원단 :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비용보조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는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도지원단 종사자 인건비는 관할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또한 시도지원단의 업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자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결연·협약 등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아동권리 보장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시·도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 센터 및 돌봄사업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시도지원단의 업무>

- 1)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지원
 -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상담 및 안내
 - 나)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평가미흡, 희망시설 컨설팅 운영
- 2) 지역아동센터 자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결연·협약 등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
- 4)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 가)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 나) 현장평가 지원(평가안내 및 홍보, 평가 모니터링 등)
 - 다)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5) 아동권리보장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6) 시·도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사업 지원
 - 가) 시·도 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
 - 나) 시·도 자원 네트워크 및 연계사업
 - 다)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업무 지원
 - 라) 시·도 특화사업 수행 및 홍보

○ 한편, 현재 위탁을 진행중인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의 위탁 이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주요 추진실적(2024 ~ 2026)>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 45개소('24년 17개소 / '25년 14개소 / '26년 14개소)
- 종사자 교육 : 89회 4,045명('24년 1,495명 / '25년 1,514명 / '26년 1,036명)

구분		2024	2025	2026
필수교육	경력시설장(5H)	4회, 196명	4회, 194명	3회, 198명
	경력생활복지사(5H)	5회, 269명	7회, 378명	5회, 391명
	신규시설장(13H)	2회, 21명	2회, 18명	1회, 13명
	신규생활복지사(13H)	2회, 170명	2회, 115명	1회, 55명
실무교육	직위, 경력, 분야 고려한 다양한 주제교육	17회, 629명	21회, 608명	4회, 183명
(필수교육) 돌봄교사교육	돌봄교사교육(4H)	3회, 210명	3회, 201명	3회, 196명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지원 : 159건('24년 51건 / '25년 60건 / '26년 48건)
- 조사연구사업
 - 종사자 운영지원 실태 및 만족도조사 실시('24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각 1회(612명) / '25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이용아동 각 1회(2,182명) / '26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각 1회(704명))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의 사업을 살펴보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을 비롯하여 종사자 교육,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지원 등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3호2)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지속 필요성) 검토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³⁾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26년 6월 기준 경기도에 776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 북부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2)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3)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관리·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에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해당 사업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⁴⁾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으로서 위탁 진행에 있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협약서 제출, 고용유지·승계 및 고용기간, 노동조건 보호 등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야 할 것임.

4)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